

# 서울동부지방법원

## 화해권고결정

사 건 2020가단 청구이의  
원 고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  
전종필 사무소(만성동)

피 고 유한회사  
서울  
대표이사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### 결정 사항

1.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 에 기한  
을 불허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# 서울동부지방법원

## 화해권고결정

사 건 2020가단 청구이의  
원 고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  
전종필 사무소(만성동)

피 고 유한회사  
서울  
대표이사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### 결정 사항

1. 원고는 2021. 11. .까지 피고에게 300,000원을 지급한다.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2. 원고가 피고에게 제1항 기재 금원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,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

동부지방법원 2014차전 2021. 10. 28.에 기초한 모든 증거 등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며, 더 이상 위 2021. 10. 28.에 기초한 증거를 하지 아니한다.
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### 청구의 표시

청 구 취 지 및 청 구 원 인

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021. 10. 28.

판사



※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,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